

제29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 
[2022. 11. 23. 10:00]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22. 11. 23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2년 11월 23일

전문위원 장 석 현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2 - 113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7일
- 라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1일

### 2. 개정이유

개정·시행된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체육단체 운영 안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“보조할 수 있다” 에서 “보조하여야 한다” 로 개정함(안 제5조 제1항)
- 나.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원기준과 범위, 지급금액, 관리·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(안 제5조 제2항, 제3항)
- 다. 그 밖에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을 규정에 맞게 개정함 (안 제1조, 제5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 제3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결과(2022. 10. 4. ~ 2022. 10. 24.)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## 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<sup>1)</sup>(2022. 2. 3. 개정, 2022. 8. 11. 시행)으로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1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사항 신·구법 비교

|   |
|---|
|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 제3항<br>[법률 제18760호, 2022. 1. 18, 일부개정]   |
| ③ 지방자치단체는 <u>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</u> 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<u>보조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|

⇒

|   |
|---|
|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 제3항<br>[법률 제18808호, 2022. 2. 3, 일부개정]  |
| ③ 지방자치단체는 <u>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</u> 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<u>지원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|

## 나. 주요 내용

- 안 제5조제1항은 개정된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“보조할 수 있다” 에서 “보조하여야 한다” 로 임의 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,
- 안 제5조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, 관리·감독,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단체의 투명한 보조금 사용을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함
- 안 제1조, 제5조에서는 그 밖에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을 규정에 맞게 개정함

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
-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, 체육회의 감독<sup>2)</sup> 자격인 소관 부서에서는 체육회 운영·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

2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3조(감독) ① 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도평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20. 12. 8.>

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. <신설 2020. 12. 8.>

**□ 국민체육진흥법**

**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**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스포츠윤리센터,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**제43조(감독)** ① 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.

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.